

제품안전 질의응답

Q & A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DVR(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취득해야 할 인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댑터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과 220V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 안전인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

DVR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나, 동 DVR이 전기적·기계적으로 분리된 외부 직류전원장치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동작되는 구조의 제품일 경우에는 동 자율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DVR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직류전원장치는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은 직류전원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2

가구, 파티션 등에 부착사용을 위해 전원코드셋을 사용하지 않고 멀티콘센트에 상호 연결커플러를 부착한 구조의 제품의 안전인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호연결 커플러가 부착된 멀티콘센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나 동 제품의 구조가 멀티콘센트를 무한정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임을 알려 드립니다.

Q3

제모를 하기위해 캔 속에 들어있는 액을 따뜻하게 하여 녹이는 제품으로 ‘왁스 워머기’ 인데 이 제품도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요?



왁스 용해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므로 출고(통관)전에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Q4

섬유가 다량 포함된 러닝화, 스니커즈, 트래킹화 및 등산화의 경우에는 섬유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전 ·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섬유제품은 의류(의의류, 중의류, 내의류, 학생복, 한복) 및 그 밖의 섬유제품(이불 및 요, 방석류, 쿠션류, 모포, 침낭, 카페트, 모자, 장갑, 양말, 기저귀, 수의, 가발,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솔, 넥타이, 모기장, 덮개, 가방, 턱받이, 커튼류, 운동화)을 말합니다. 따라서, 섬유가 다량 포함된 러닝화, 스니커즈, 트래킹화 및 등산화는 안전 ·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됩니다.

